

#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7. 16.(수)

관광건설위원장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년 7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15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2003. 7. 11.)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박 언 창)

### 가. 제안이유

- 국내 유일의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큰 청남대의 관리권이 도로 이관되어 주민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 청남대를 내·외국인들이 찾고 싶어하는 국가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청남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 등으로 하고 관람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각각 09:00~18:00, 09:00~17:00로 함
- 입장료는 어른 5,000원(단체 4,000원), 청소년 및 군경 4,000원(단체 3,000원), 어린이 및 노인 3,000원(단체 2,000원), 6세 이하의 영·유아는 무료로 함
-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청소, 경비, 관광안내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익 수)

-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 본 조례는 대통령 전용별장으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이 큰 청남대의 관리권이 도로 이관되고, 국민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 청남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휴관일 지정과 입장료 산정 근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결의담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붙임서류 :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

##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청남대(이하 '청남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청남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충청북도청남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남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청남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남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청남대의 소장자료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남대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사업소 총무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직 책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개관) ①청남대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청남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조(입장료 징수 등) ①도지사는 관람객으로부터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표 1의 입장료를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4.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석하는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단체입장료를 징수한다.

1.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 보조자 1인

④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장권) ①입장권은 어음 청소년·군경 및 어린이·노인으로 구분하여 별표 2의 개인입장권과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의한 별표 3의 단체입장권으로 한다.

②입장권의 대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하고, 대표소에는 입장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금지·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정신질환 및 전염병환자
2.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안전관리상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②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통제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남대 경비, 청소, 관광안내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입 장 요 금 표

(단위:원)

구 분	개 인	단 체 (30인 이상)	비 고
어 른	5,000	4,000	19세~64세
청소년	4,000	3,000	13세~18세
군 경			하사 이하의 자와 전투경찰순경
어린이	3,000	2,000	7세~12세
노 인			65세 이상

[별표 2]

&lt;앞면&gt;

<b>개인입장권원부</b> 일련번호(좌측) 일시 어른, 군경, 노인 등 구분 입장요금                      원	<b>개인입장권</b> 일련번호(좌측) 일시 어른, 군경, 노인 등 구분 입장요금                      원	청남대 전경 사진
--	--	-----------

&lt;뒷면&gt;

		청남대 주변 관광안내도
--	--	--------------

\* 어른, 청소년·군경, 어린이·노인 입장권은 요금별 다른 색재로 구분 제작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26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23조(고궁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계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